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말한다.

③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적평가의 원칙) 교원의 업적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제 2 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제4조(평가대상기간 및 시기) ①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1일에서 당해연도 11월17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② 평가 시기는 매년 11월로 연1회 평가한다.

제5조(업적평가기구) 교원업적의 평가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업적평가주무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교수 3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19.4.8. 개정) (2020.7.1.개정) (2021. 3. .개정)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본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을 매해년도 11월17일까지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 및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을 수합·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상정된 교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무부서는 업적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교원은 정량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재심청구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출서류에 대한 미비 등 심사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

② 평가위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 주무부서는 그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을 청구한 교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 장 평가영역 및 기준

제10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영역평가와 스쿨(전공)/대학전체영역평가, 스쿨(부서)영역평가로 구분한다. (2021.3. 개정)

- ① 개인영역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2021. 3. .개정)
- ② 스쿨(전공)/대학전체영역평가는 정량지표로 평가한다. (2021. 3. .개정)
- ③ 스쿨(부서) 영역평가는 정성지표로 평가한다.(2021.3. . 신설)

제11조(평가비율)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 기준의 교수 구분별 평가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2019.4.8. 개정)

제12조(개인영역평가) ① 개인영역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한다.(2021. 3. .개정)

- ② 정량지표는 교육활동, 연구 등으로 평가한다. (2021. 3. .개정)
- ③ 교수는 자기발전계획서를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 기준 확정 후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019.4.8. 개정) (2020.5.27. 개정) (2021. 3. .개정)
- ④ (삭제)
- ⑤ 정성지표는 개인 업적결과를 기준으로 원장, 본부소속부서장(처장), 총장이 각각 결과중심으로 평가한다.(2019.4.8.개정) (2020.7.1.개정) (2021.3. .개정)(2023.4. .개정)

제13조(스쿨(전공)/대학전체 영역평가) ① 스쿨(전공)/대학전체 영역평가는 정량지표로 평가한다.(2021. 3. .개정)

- ② 정량지표는 재학생충원율, 산학지수, 입학지수, 만족도 지수 등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17.6.1. 개정) (2019.4.8. 개정) (2021. 3. .개정)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제13조의2(전공영역평가) 삭제

제13조의 3(스쿨(부서)) 영역평가) ① 스쿨(부서) 영역평가는 정성지표로 평가한다.

- ② 정성지표 평가는 매년 스쿨(부서)에서 발표하는 사업 및 발전계획서와 사업추진실적을 토대로 평가위원회와 총장이 결과중심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중간실적보고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4조(가점 평가) 삭제

제14조의2(평가조정) (2019.4.8. 개정) (2021.3. .삭제)

제15조(세부평가기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별 세부평가기준(별첨1)은 별도로 정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업적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비밀유지) 본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을 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7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③ 삭제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직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규정 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2020.7.1. 개정)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인사 및 보수산정의 기초자료, 우수교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경과 조치) 2017학년도 산학연구학기제 대상자(1학기 3월 1일부터 2학기 개강전 까지, 2학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

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2025. 6.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평가기준의 방향성

- 대학의 목표가 명확한 정량 지표를 목표로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도록 한다.
- 대학의 목표 지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처장 그룹도 대학 전체의 정량 지표로 평가하여, 구성원 전체의 달성을 함께 독려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 정성평가 결과가 명확화, 객관화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 제도를 지속 보완한다.

2. 주요 항목과 그 의미 및 목표

구분	항목	의미 및 목표
스쿨/ 대학 전체	재학생 충원율	대외 지표경쟁력 확보 / 안정적 등록금 재원 확보
	산학지수 (취업률, 유지취업률, 현장실습 이수율)	대외 지표경쟁력 확보
	입학지수 (등록률, 순환율, 추가모집 등록자 수)	외부 경쟁력 확보 / 안정적 신입생 확보 독려 / 지원 자 관리 독려
	만족도 지수	재학생 만족도 관리 독려
스쿨 (부서)	위원회 평가	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한 평가
	총장 평가	-
개인	교육활동	수업 및 운영 평가
	연구	개인연구 및 대학/부서/스쿨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산학
	원장 평가	스쿨 발전을 위해 각 전임교원의 스쿨에서의 역할 및 책임(R&R)을 사전에 스쿨원장과 협의하여 계 획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함 -교원별 R&R 작성(원장-본인 협의) → 교원별 R&R에 기반한 그해 자기발전계획서 작성(5월) → 자기발전 계획서에 기반한 개인별 실적 보고(11월) → 교원별 R&R 및 실적에 기반한 원장평가 및 의견서 작성(11 월)
	총장 평가	평가의 핵심 키워드 “확산” 대학(스쿨,부서) 발전을 위해 각 교원이 적극성을 발휘 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연구하며 실행하였는가

3. 교원구분별 배점표

세부 기준				스쿨소속 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연구 학기제 교원	교양교육원 교원	스쿨 원장	본부소속 (부)센터장	처장	
평가기준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배점	배점	배점	배점	배점	
전공 / 대학 전체	정량 (270)	재학생 충원율 (100)	재학생 충원율	90	80	90	100 (재학생 만족도 중 교양교육 관련항목)	100	90	100	
			재학생 충원율 가점	10	10	10		10	10	10	
		산학 지수 (100)	졸업생 취업률	60	75	60		70	60	70	
			유지 취업률	20	30	20		20	20	20	
			현장실습 이수율	10	20	10		10	10	10	
			취업률 가점	10	-	10		10	10	10	
		입학 지수 (60)	등록률이 100% 미만인 경우 감점	-	-	-		-	-	-	-
			순환율 (외부 경쟁력 측면)	30	25	30		40	30	40	
			추가모집 등록자수 (정시 관리적 측면)	30	20	30		30	30	30	
		만족도 지수 (10)	재학생 만족도	10	10	10		10	10	10	
전공 (부서)	정성 (80)	위원회 평가(30)		30	30	30	150	50	30(스쿨)	50(부서)	
		총장 평가(50)		50	50	50	100	-	50(스쿨)	-	
소 계(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개인	정량 (300)	교육 활동	수업 및 운영 평가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연구	개인연구, 산학, 대학 발전 연구	150	150	150	150	-	100	-	
	정성 (350)	원장 평가		250 (소속 스쿨 교수 평균 75점/100점)	250 (소속 스쿨 교수 평균 75점/100점)	250 (소속 스쿨 교수 평균 75점/100점)	250 (소속 스쿨 교수 평균 75점/100점)	-	100 (소속 스쿨 교수 평균 75점/100점)	-	
		본부 소속 부서장 평가		-	-	-	-	-	150	-	
		총장 평가		100	100	100	100	500	150	500	
소 계(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합 계(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공통정량지표는 기본적으로 전공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단, 처장과 소속이 교양교육원인 본부센터장은 대학평균을 적용하고, 이 외 평가 그룹들은 스쿨 평균을 적용한다.

나. 신규스쿨 수립으로 인해 산학지수가 없는 경우

산학지수 배점을 재학생충원율(50%), 입학지수(50%)를 세부항목별 점수 비율로 배점한다.

다. 스쿨 소속 교수 개인에 대한 원장의 정성평가는 스쿨 소속 교수 전체평균을 최대 75점(100점 기준)으로 맞추어 평가한 후 배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라. 교양교육원장의 스쿨정량평가 점수는 교양교육원 교원 평가 배점인 100점을 적용한 후 스쿨원장그룹의 정량 만점인 300점으로 환산한다.

마. 스쿨(부서)의 위원회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바. 스쿨간 겸직 교원의 경우 원장평가 250점 중 150점은 원소속 원장이 평가하고(스쿨 교수 평균 75점/100점 평가 후 150점으로 환산), 100점은 타 스쿨 원장이 절대평가한다. 단, 한 학기를 초과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스쿨 원장과 처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모집 정지 전공의 평가 방법(신입생 모집 정원이 0명인 시점부터 모두 아래 방법 적용)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재학생 충원율	100	산출식: 모집정지전공, 자율전공을 제외한 전공들의 평균값 가점은 미반영
산학지수	100	최저 전공값 반영. 가점은 미반영
입학지수	60	산출식: 모집정지전공, 자율전공을 제외한 전공들의 평균값
만족도지수	10	산출식: 모집정지전공, 자율전공을 제외한 전공들의 평균값
원장 부재로 원장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250	교원인사담당 부서장이 원장 평가항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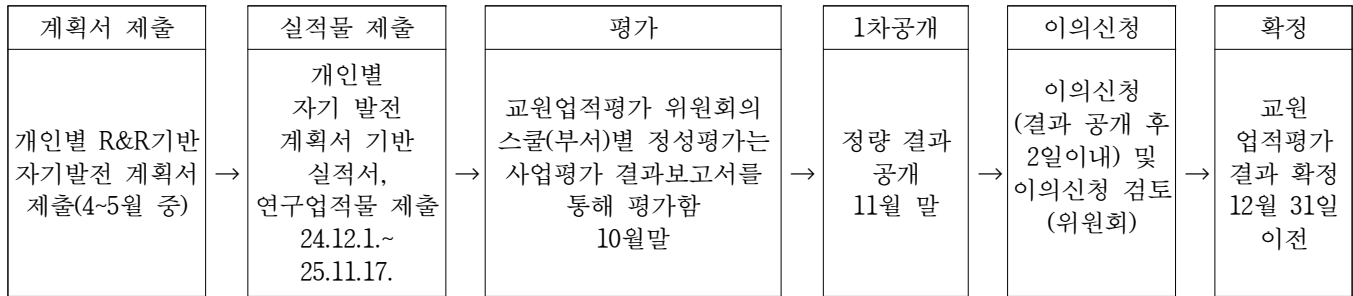
아. 산학연구학기 교원의 평가 방법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산학연구학기 교원의 개인-정량-교육활동	150	수업평가가 없는 학기는 수업평가가 있는 전/후 학기의 수업평가 점수를 100% 반영하고 교육활동의 감점사항은 없도록 함
산학연구학기 교원의 개인-정량-연구 (개인업적물 또는 산학연구결과보고서)	150	업적평가기간(전년도12월~해당연도11월17일)에서 - 산학기간이 비산학기간보다 긴 경우 산학보고서로 평가 - 이 외의 경우는 산학보고서와 개인연구실적물 중 선택권을 부여. 개인연구실적물을 선택한 경우 실적물 업로드 기간 중 업로드 필수 -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산학연구결과보고서의 점수를 평가

자. 재직기간 부재 교원의 평가 방법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재직기간 부재로 인해 개인 정량 점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휴직, 복직, 징계 등) (평가 시기인 11월에 미재직상태인 경우)	650	- 전공 공통 정량, 정성값은 전공 취득 점수 반영 - 징계로 인해 점수 산출이 되지 않는 값은 0점 처리 - 개인 정량-교육활동(150점): 과거 3년 평균점수 반영 - 개인 정량-연구(150점): 실적물 업로드 기간 중 업로드할 경우 실적물 평가. 실적물 미업로드 시 0점 처리. 실적물 업로드 기간 이후 복직된 경우 과거 3년 연구업적 평가 점수 반영 - 개인 정성-원장 평가(250점): 전공평균값 - 개인 정성-총장 평가(100점): 전공평균값(원장점수 제외)

4. 평가 방법



- 평가 세부 사항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인정/불인정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함

5. 정량

※ 각 정량지표의 목표 값은 연초 사업계획 발표 시 전략지원처에서 총괄하여 발표함

5-1) 공통 정량 지표 정의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재학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기준일: 해당연도 4/1일자(배점*67%), 10/1일자(배점*33%), 학기별 산정 후 합산 -4/1, 10/1 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중 재학생충원율의 연도별 대학목표 -계산식: 전공별 재학률 / 대학 목표 * 배점 (최대값은 배점)
		재학생 충원율 가점	-대학 목표지표 이상인 경우 적용 (학기별 산정, 비율은 학기별 재학생 충원율 배점 비율과 동일) -계산식 : (전공별 재학률 - 대학전체 목표) (최대값은 배점)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입학 지수	등록률이 100% 미만인 경우 감점처리	-대상: 2025학년도 입시 -감점 = (100 - 신입생 등록률) * 10 (등록률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
		순환율 (외부 경쟁력 측면)	-대상: 2025학년도 입시(수시, 정시) -계산식: 1) 순환율 <= 200인 경우 : 점수 = 배점만점 만점 취득 2) 순환율 > 200인 경우 : 아래 산식에 의해 배점 점수=배점만점-(배점만점-기본점수)*(전공순환율-최저순환율)/(최고순환율-최저순환율) <용어> · 배점만점 : 최대 배점점수 · 기본점수 : 최소 배점점수 (배점만점의 1/2) · 최저순환율 : 전체 전공의 순환율 중 가장 낮은 순환율 · 최고순환율 : 전체 전공의 순환율 중 가장 높은 순환율 · 순환율은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전체 순환율로 계산
		추가모집 등록자 수 (정시 관리적 측면)	-대상: 2025학년도 입시 -계산식: 배점-2(배점 * 자율모집 수/입학정원)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산학 지수	졸업생 취업률	-대학 목표값: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중장기(2025년~2027년) 목표 취업률 (평가학년도 이전년도 공시 취업률 기준) -취업률 공시자료(50%): 평가학년도 이전년도 공시 취업률값(2024년 2월 졸업자 및 2023년 8월 졸업자 취업률) ·계산식: $\frac{\text{전공별공시취업률}}{\text{대학목표취업률}} \times \text{배점 (최대값은배점)}$ -해당년도 졸업생 취업률 향상노력(50%) ·계산식: $\frac{\text{전공별자체취업률 (건보·개인창작+국세DB)}}{\text{대학목표취업률}} \times \text{배점 (최대값은배점)}$ · 대상: 당해연도 2월 졸업생+전년도 8월 졸업생 · 기준값: 전공별 자체 현황보고 값(10.31자 기준) · 비교: 평가 이전년도 공시자료와의 차이 수치는 가감점 적용
		유지 취업률	-대학 목표값: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중장기(2025년~2027년) 목표 유지취업률 (평가학년도 이전년도 공시 유지 취업률 기준) ·계산식: $\frac{\text{전공별유지취업률}}{\text{대학목표유지취업률}} \times \text{배점 (최대값은배점)}$
		현장 실습 이수율	-대학 목표 값: 수도권 경쟁대학 평균 현장실습 이수율 (평가학년도 6월 공시된 값 기준) -기준일: 전년도 2학기~평가연도 여름학기 -기준 데이터: 전공별 현장실습 이수 현황 ·계산식: $\frac{\text{전공별현장실습이수율(3개산식의합)}}{\text{대학목표}} \times \text{배점 (최대값은배점)}$ ① 가중치(1.5) * 12주 이상으로 운영된 표준현장실습 이수율 ② 가중치(1.0) * 4주 이상으로 운영된 표준현장실습 이수율 ③ 가중치(0.5) * 4주 이상으로 운영된 자율현장실습 이수율
		취업률 가점	-취업률이 대학 목표지표 이상인 경우 -계산식: (전공별 취업률 - 대학 목표 취업률) * 배점 (최대값은 배점)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만족도 지수	재학생 만족도	-계산식: 만족도 결과(5.0 만점 환산) * 2 -스쿨은 전공별 만족도 문항 결과를 적용하고, 본부 보직교수(처장, 소속이 교양교육원인 본부센터장)의 경우 대학전체(평균) 만족 도를 적용함

5-2) 교양교육원의 스쿨공통지표

- 배점: 100점 만점
- 계산식: 만족도 결과(5.0 만점) * 20점 환산
- 비교: 교양교육원의 스쿨공통지표는 재학생 만족도 지표로 산정하며, 재학생 만족도 중 교양교육 관련 항목을 반영함

5-3) 개인 정량 - 교육활동의 정의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교육활동	수업 및 운영 평가	가. 계산식: 수업평가점수*30점 (배점 기준으로 환산)												
			나. 수업평가점수: 평가학년도 1학기 와 평가 직전 학년도 2학기의 평균												
			다. 기타사항												
			① ‘나. 항’ 의 기간 동안 강의하고 평가받은 전체과목을 인정함(수강인원과 관계없음) (단, 공동수업과목 중 사전에 교원업적평가 주무 부서에 전자문서로 요청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교수 전체 수업평가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할 수 있음)												
			② 기본시수 부족의 경우 감점평가: 부족시수*6.25점 2025학년도 1,2학기 합산 주당수업시수가 2개 학기 합산 기준시수 대비 부족한 경우 최대 150점까지 개인공통 정량지표에서 감점 (단, 아래사항의 경우만 예외로 할 수 있음												
			1. 대학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기별로 사전에 교원업적평가 주무 부서를 통 해 총장허가를 득한 경우(내부결재 문서 필요)												
			2. 긴급 보직 면직(학기 개시 30일 이내)으로 인해 기준 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라. 수업관련 행정체계 미준수의 경우 감점평가(최대 50점까지만 감점 적용)												
			<table><tr><th>감점 사항</th><th>감점</th></tr><tr><td>결보강 계획에 의한 보강 미실시의 경우</td><td>-10점/회</td></tr><tr><td>전자출결 시행 미준수의 경우</td><td>-5점/강좌당,일자별</td></tr><tr><td>성적평가결과 기한내 미입력시</td><td>-10점/강좌</td></tr><tr><td>성적이의신청 기간내 답변 미입력시</td><td>-5점/건</td></tr><tr><td>강의계획서, 자체평가 기한내 미입력시</td><td>-10점/강좌</td></tr></table>	감점 사항	감점	결보강 계획에 의한 보강 미실시의 경우	-10점/회	전자출결 시행 미준수의 경우	-5점/강좌당,일자별	성적평가결과 기한내 미입력시	-10점/강좌	성적이의신청 기간내 답변 미입력시	-5점/건	강의계획서, 자체평가 기한내 미입력시	-10점/강좌
감점 사항	감점														
결보강 계획에 의한 보강 미실시의 경우	-10점/회														
전자출결 시행 미준수의 경우	-5점/강좌당,일자별														
성적평가결과 기한내 미입력시	-10점/강좌														
성적이의신청 기간내 답변 미입력시	-5점/건														
강의계획서, 자체평가 기한내 미입력시	-10점/강좌														

5-4) 개인 정량 - 연구의 정의

가. 모든 연구 및 산학 업적은 업적물에 대학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만 인정함. 단 부득이하게 표기가 안 된 경우 3회 이상 외부 홍보자료를 첨부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대학명은 표기되어야 함

나. [산학] 업적물의 경우는 사전에 대학에 신고된 경우만 인정함

다. 연구는 참여자수로 나누어 적용하며, 단 개인이 취득하는 최하점은 배점점수의 10%로 한다.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연구 및 산학 업적	개인연구	가. 학술논문: 최대 100점/참여자수 ① SCI급 논문: 개인 연구점수 배점의 최대치 인정, 저자수 무관 ② 외국 논문지, 등재지 게재 논문, 인용 후 학위취득 논문: 100점 ③ 등재 후보지 게재 논문: 80점 ④ 학술대회, 공인학회, 협회 및 정부기관 발간 논문: 50점 ⑤ 유관기관, 협회, 학회, 재단 등 공적 단체 주관 세미나 주제 발표: 20점 ⑥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 \times 2$ 나. 저서: 최대 100점/저자수 ① ISBN등으로 외부에 공개된 저서에 한해 인정함 ② 번역서의 경우 배점의 50% 인정 ③ 개정의 경우 배점의 최대 50% 인정(필요시 위원회에서 개정 부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개인 및 공동 전시회: 최대 100점/참여자수 ① 공동전시의 경우 참여자수는 최대 참여자수를 5인으로 산정함 라. 공모전 수상 ① 1위에 해당하는 대상 등: 최대 100점/참여자수 ② 금은동상: 최대 70점/참여자수 ③ 입상 등: 최대 50점/참여자수 ④ 논문저술, 도서출판(저서)과 별개로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수상하였을 경우 가산점 부여, 가산점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⑤ 이 외의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수 있음 마. 공연 및 콘텐츠제작 관련 업적물: 최대 100점/참여자수 ① 외부에 공개된 전문성, 전공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에 한함 ② 총괄감독, 주조연, 파트장(각 파트 총괄 책임자): 100점 만점 ③ 영역별 조감독, 단역, 기타 참여자: 50점 만점 ④ 전문적인 창작물 콘텐츠는 단독 창작물인 경우 50점, 연작콘텐츠의 경우 3회 이상 100점, 정부기관 매체 발표는 30점 ⑤ 프로듀서(PD)는 활동은 인정, 지도교수 활동은 불인정함 ⑥ 인터뷰(인터뷰어, 인터뷰이) 활동은 불인정함 ⑦ 콘텐츠의 분량, 완성도, 외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대 인정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바. 오픈플랫폼 및 기고활동: 최대 50점(플랫폼별이 아닌 오픈플랫폼 활동 전체의 최대점) ① 오픈플랫폼 및 기고활동의 경우 교원 본인이 연구 활동 영역임을 증빙(A4 1장 분량)하고 반영 여부는 콘텐츠의 분량(지속성), 완성도(전문성), 외부에 미치는 영향(파급력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적정한 점수 구간값을 교원업적평가위원이 각각 투표한 후 다득표한 구간값을 최종 반영한다. ② 점수 구간값 및 예시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table><tr><td>평가 점수 구간</td><td>0점</td><td>15점</td><td>35점</td><td>50점</td></tr><tr><td>선택 위원 수(총7명)</td><td>1명</td><td>2명</td><td>3명</td><td>1명</td></tr></table> 예시) 35점을 선택한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음. 35점으로 최종 반영 사. 이 외의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수 있음	평가 점수 구간	0점	15점	35점	50점	선택 위원 수(총7명)	1명	2명	3명	1명																								
평가 점수 구간	0점	15점	35점	50점																																	
선택 위원 수(총7명)	1명	2명	3명	1명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	가. 아래 사항의 경우 참여자의 참여도에 따라 항목 책임자의 상중하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 배점함 (상: 최대배점, 중: 최대배점의 2/3, 하: 최대배점의 1/2) <table><tr><th rowspan="2">항목</th><th colspan="2">최대 배점</th><th rowspan="2">비고(최대 배점 조정)</th></tr><tr><th>수혜시</th><th>미수혜시</th></tr><tr><td>대학 기관평가 인증(사후점검 포함)</td><td>150</td><td>75</td><td>미수혜기준: 인증에 문제가 생긴 경우</td></tr><tr><td>10억 이상을 수혜하는 재정지원 사업 제안서</td><td>150</td><td>50</td><td></td></tr><tr><td>10억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 연차 평가</td><td>150</td><td>75</td><td>미수혜기준: 연차평가 결과 등급이 평균 등급 미만</td></tr><tr><td>6억 이상 10억 미만</td><td>75</td><td>25</td><td rowspan="5">금액은 지원금 기준(대응금 제외)임</td></tr><tr><td>3억 이상 6억 미만</td><td>50</td><td>15</td></tr><tr><td>1억 이상 3억 미만</td><td>30</td><td>10</td></tr><tr><td>5천만원 이상 1억 미만</td><td>15</td><td>5</td></tr><tr><td>5천만원 미만</td><td>10</td><td>3</td></tr></table> 나. 위 표 외에 대학 발전을 위해 진행한 연구: 최대 150점 1) 대학 발전 연구 ① 대학발전연구 과제 참여 배점은 과제당 1/n (단, 5명 이상 참여해도 최소 1/5로 반영함) - 지정과제 평가 절차: 대학 본부에서 접수 공고→ 교원 신청→ 공고 부처에서 선정→ 9월말 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10월중순까지 공고 부처에서 접수 평가 - 신청과제의 경우 절차는 지정과제와 동일하며 선정 및 점수평가는 교무위원회에서 실시함 ② 매우우수(150점~121점), 우수(120점~91점), 보통(90점~61점), 미흡(60점~31점), 매우미흡(30 점~0점), 미완료(0) ③ 대학발전연구 결과물은 대학 전체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대학발전연구가 있어야만 최대 점수인 150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단서조항 폐지(2023학년도 부터 시행) 2)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 최대 50점 ① 팀티칭 인원수 무관(개인연구 150점에 포함), 교육혁신에 대한 범위와 평가는 주관부서장 또는 주관 스쿨원장이 함 가) 배점 기준: 타스쿨 및 무경계전공제 정규교과운영 시 과목당 25점(스쿨내 전공은 불인 정), 대학전체 비교과운영 시 과목당 최대 10점, 타스쿨교육과정 개발참여 시 최대 20점 나) 교육혁신 관점에서 기획설계된 비교과의 경우 참여 학생이 3개 스쿨 이상이어야 함 다)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의 소속 교원이 소속 조직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은 평가에서 제외 다. 대학 단위 행사: 최대 100점/ 참여자수 ① 행사 주관부서에 시행보고와 결과보고 결재를 득한 대학단위 행사를 주관한 경우 ② 대학단위 행사 인정 여부는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점 수 평가함	항목	최대 배점		비고(최대 배점 조정)	수혜시	미수혜시	대학 기관평가 인증(사후점검 포함)	150	75	미수혜기준: 인증에 문제가 생긴 경우	10억 이상을 수혜하는 재정지원 사업 제안서	150	50		10억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 연차 평가	150	75	미수혜기준: 연차평가 결과 등급이 평균 등급 미만	6억 이상 10억 미만	75	25	금액은 지원금 기준(대응금 제외)임	3억 이상 6억 미만	50	15	1억 이상 3억 미만	30	10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15	5	5천만원 미만	10	3
항목	최대 배점		비고(최대 배점 조정)																																		
	수혜시	미수혜시																																			
대학 기관평가 인증(사후점검 포함)	150	75	미수혜기준: 인증에 문제가 생긴 경우																																		
10억 이상을 수혜하는 재정지원 사업 제안서	150	50																																			
10억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 연차 평가	150	75	미수혜기준: 연차평가 결과 등급이 평균 등급 미만																																		
6억 이상 10억 미만	75	25	금액은 지원금 기준(대응금 제외)임																																		
3억 이상 6억 미만	50	15																																			
1억 이상 3억 미만	30	10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15	5																																			
5천만원 미만	10	3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가. 외부 연구용역 수주: 최대 100점/건 ① 외부 연구용역 수주 환산연구비 100만원당 10점 ② 환산연구비=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외부 공동연구원 제외) 인건비*0.1+기관간접비*1+기타경비(재료비포함)*0.3+학생 인건비(전년도 8월·당해 연도 2월 졸업생, 재적생)*1 ③ 수주연구비는 평가기간 내에 학교에 입금된 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간 내 종료된 연구에 한해 인정.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최종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차년도 평가에 이를 반영 가능 ④ 산학협력단에 사전 신고 된 후 평가기간 내에 정산 보고된 금액으로 평가함 ⑤ 환산 연구점수 / 참여자수(외부 공동연구원, 전년도 8월·당해 연도 2월 졸업생, 재적생 제외) 나. 산업체 자문: 최대 100점/건 ① 산학협력단에 사전 신고 된 자문의 경우만 인정함 ② 산업체자문 환산 비용 100만원당 10점 ③ 환산 연구점수 / 참여자수 다.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록 <table><tr><th>구분</th><th>배점(예시)</th></tr><tr><td>해외특허 등록</td><td>100점/발명자 수</td></tr><tr><td>국내특허 등록</td><td>80점/발명자 수</td></tr><tr><td>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등록</td><td>50점/발명자 수</td></tr></table> 산학 라. 교수창업 혹은 학교기업 운영 : 환산매출액 100만원당 10점(교내 절차에 의해 설립한 경우에 한함) ① 교수창업) 환산매출액= 당해연도 대학납부 기부금 * 1 또는, 우리대학으로의 연구(용역) 프로젝트 발주금액 중 기관간접비 + 학생인건비(전년도 8월·당해 연도 2월 졸업생, 재적생) ② 학교기업 운영) 환산매출액 = 당기운영차손익 * 1 (당기운영차손익은 전기결산서 기준) (산학협력단에 사전 신고된 참여 인원에 한정하며, 평가점수는 참여자 수로 나눔) 마. 산학발전 기부금: 100만원당 10점 ① 환산점수 / 참여자수 바. 기타 산학협력수익: 환산수익금 100만원당 10점 ① 환산수익금 =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외부 공동연구원 제외) 인건비*0.1 + 기관간접비*1 + 기타경비(재료비포함)*0.3 + 학생인건비(전년도 8월·당해 연도 2월 졸업생, 재적생)*1 ② 환산점수 / 참여자수(학생인원 제외)(외부 공동연구원, 전년도 8월·당해 연도 2월 졸업생, 재적생 제외) 사. 취업률 향상 기여	구분	배점(예시)	해외특허 등록	100점/발명자 수	국내특허 등록	80점/발명자 수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등록	50점/발명자 수
구분	배점(예시)										
해외특허 등록	100점/발명자 수										
국내특허 등록	80점/발명자 수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등록	50점/발명자 수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구분	교육지원		배점기준	배점
			미취업 졸업생 관리	대학 일자리플 러스센터	졸업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부서에 ‘졸업생 취업 관리 신청서’ 사전 제출 필수 (4/30, 8/31 중 선택 제출) -신청 교수 개인별 미취업 졸업 생 최소 5명 이상 관리 -학생 당 최소 3회 이상 취업 상 담 및 일지 작성 (~11/30)	-담당 관리 학생 취업 여부 평가 (11/30 스쿨 제출 『직장건보취업률』 기준) · 취업률 60% 이상 5점 · 취업률 30%-60% 미만 3점 (*단, 관리 졸업생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1.5배로 배점)
			자격증 취득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관련 사업 참여 시 자동 신청 -교수 개인별 학생 최소 10명 이 상 관리	-응시율 80%, 취득률 70% 이상 10점 -응시율 80%, 취득률 70% 미만 5점
			취업창업 프로그램		취업창업 교육지원 센터	프런티어 지원사업	-지도교수 담당 팀이 프런티어 지원 사업 선정 시 자동 신청 -활동보고서, 멘토링보고서 작성 및 팀별 목표 (의무이행사항) 달성 시 10점 -학생창업(사업자등록)시 건당 5점 추가
			- 취업창업지도위원회에서 검증 후 인정				
			아. 현장실습이수율 향상기여				
			구분	배점기준		배점	비고
			현장실습 순회지도	현장실습 교과목 지도교수가 순회지도 (학점부여, 성적평가 등 이행)		-12주 이상 표준현장실습 순회지도: 학생당 1.5점 -4주 이상 표준현장실습 순회지도: 학생당 1점 -4주 이상 자율현장실습 순회지도: 학생당 0.5점	영양사, 유아교육 등 의무 현장실습 제외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검증 후 인정				
자. 산업체연수: 1일 1점/ 최대 30점까지 인정							
① 교원인사부서에 사전 신고된 산업체 연수에 한함							
② 5일 이상 시 인정함							
③ 사전 신고 시 허가된 경우 ‘토요일, 일요일’ 도 인정함							
④ 대학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전공 심화 등의 연수는 미인정 함							

6. 정성

분류	평가항목	세부구분	평가방법
K (조직 가치)	전공 (부서)	위원회 평가	가. 평가대상: 각 전공(부서) 단위 나. 평가방법: 실적보고서를 통한 위원회 정성평가. 전공(부서) 전체 평균이 배점의 70%가 되도록 평가 함(위원 본인 소속 전공(부서)은 평가 하지 않음). 전학년 편제정원이 0명인 전공의 경우 별도 실적보고서 서식 사용
		총장평가	가. 평가대상: 각 전공(부서) 단위 나. 평가방법: 배점기준 0점에서 만점 사이 점수 부여
	개인	원장평가	가. 평가대상: 평가 대상 각 개인 나. 평가방법: 피평가 대상자 전체 평균이 배점의 75%(100점 만점일때 75점)가 되도록 조정하여 평가한 후 배점으로 환산 반영 다.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피평가자와의 자기발전계획서 협의를 통해 원장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업적평가 기간 중 원장이 변경된 경우 역임기간이 오래된 원장이 평가함
		본부 부서장 평가 /총장평가	가. 평가대상: 평가 대상 각 개인 나. 평가방법: 배점기준 0점에서 만점 사이 점수 부여

7. 평가 기타 사항

- 가. 업적평가 기간 중 보직이 변경되면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보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나. 본부소속 보직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원인 경우 평가는 보직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다. 전담직 전임교원의 평가는 스쿨소속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라. 휴직자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자와 동일하게 평가함, 수업 미 실시 시 수업평가 0점
단, 평가 최종 점수가 650점 이하일 경우 650점으로 보정함(개인 총장 정성 점수에서 조정)

8. 붙임

붙임 1. 개인별 자기발전계획서(전산시스템을 활용함)

직전연도 원장 평가 의견서 [우수한 점]	직전연도 원장 평가 의견서 [발전시켜야 할 점]
[개인 R&R 기반 자기발전계획] • 대학과 스쿨 발전을 위한 개인의 계획을 스쿨 원장과 사전 협의 및 확정된 R&R 기반 계획서 • 반드시 R&R 항목별 계획 작성 • R&R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스쿨원장의 승인을 통해 교원인사 담당부서에 R&R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계획] •	

제출일:

스쿨명:

전공명:

제출자:

(서명)

스쿨원장:

(서명)

붙임 2. 개인별 실적(전산 시스템을 활용함)

[개인 R&R 기반 실적 및 성과] • 개인 R&R 기반 실적 및 성과 기술 • 개인 R&R 항목별로 실적 및 성과를 기술함
[기타 실적 및 성과]

제출일:

스쿨명:

전공명:

제출자:

(서명)

붙임 3. 스쿨 정성평가 의견서(교원업적평가 위원 작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함)

우수한 점	
발전시켜야 하는 점	* 개조식,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

제출일:

평가대상 스쿨명:

제출자:

(서명)

붙임 4. 개인 정성평가 의견서(스쿨 원장 작성, 전산시스템을 활용함)

(우수한점) 올해 스쿨(담당부서)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	
* 개조식,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	
(발전시켜야할점) 내년에 스쿨(담당부서)의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	
* 개조식,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3개 이상 기술	